



청소년 유해환경 **OUT** 캠페인!

“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”

✓ 술·담배 판매 시 **신분증**을 꼭 **확인**해 주세요.

✓ 청소년유해약물(술·담배 등)·유해물건 판매 및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**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**받습니다.

청소년 출입·고용이 금지된 업소, 술·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는 청소년 출입, 근로, 구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증과 같이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
*신분증 확인서비스(국번없이 1382), e-운전면허, 경찰청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조회 사이트(efine.go.kr)

청소년보호법 “청소년” 만 19세 미만의 자 (청소년보호법 제1조제1호)

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 (청소년보호법 제1조제5호)

**청소년 출입
·
고용 금지업소**

일반게임제공업소(청소년이용불가 및 전체이용가 게임 제공), 일반 마사지업소, 멀티방,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가요주점, 비디오방, DVD방, 노래연습장(청소년실출입가능), 전화방, 성인용품점, 키스방, 안마방, 경마 장외발매소 등

**청소년 고용
금지 업소**

청소년게임제공업, pc방, 숙박업소, 만화대여점, 호프점, 소주방, 티켓다방,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등

청소년 판매금지 약물·유해물건

| 유해약물 | 주류, 담배, 부탄가스, 본드, 신나, 니스, 칼라풍선 등

| 유해물건 | 성기구류, 레이저포인터류,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,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

